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한 의료인 등의
최선의 처치 의무 규정〉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647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64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23인
- (2) 제 안 일 : 2024. 8. 8.
- (3) 회 부 일 : 2024. 8.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요청에 대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최선의 처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의2(진료 거부 금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발달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을 경우 이 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1)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특성이 있음.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란, 행동을 하는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 또는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 등을 의미함.²⁾
-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의 신체적·언어적인 공격, 자해행동, 파괴행동, 정형화된 행동, 소리 지르기, 울기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행동 등이 있음.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 비장애인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다음 사례와 같이 진료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함.

「발달장애인에 대한 진료거부 사례」

1. 2024년 5월, 도전적 행동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병원 측 판단으로 진료 거부³⁾

- 도전적 행동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상처가 남. 상처가 심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지만 간단한 응급처치만을 받은 뒤 도전적 행동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병원 측 판단으로 외래진료를 받지 못해 항생제 처방도 받지 못한 채 A씨는 집으로 돌아옴.
- 이 소식을 들은 부모연대 성복지회장이 찾아가 치료를 위해 119구급차를 요청해 2시간여를 서울 시내와 경기도까지 치료할 수 있는 3차 병원 등 27곳에 문의했으나 어느 곳도 발달장애 청년을 받겠다는 곳이 없었음.
- 보건복지부 담당과에까지 호소해 치료처를 찾아낸 끝에 마지막으로 2차 병원 중 한 군데 겨우 받겠다는 곳을 찾아갔으나, A씨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 나옴.

2. 2021년 12월, 마스크 못 쓰는 발달장애인 진료 거부

- A씨는 20년간 통원하며 진료를 받은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병원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하다”며 진료를 거부당함. A씨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함. 마스크를 씌워주려는 부모의 손등을 물기도 함. 이로 인해 A씨는 응급진료와 전문의 대면진료를

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아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김미옥, & 김고은. (2017).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관한 쟁점과 전망. 비판사회정책, (56), 59-94.

받지 못하고 있음.

3. 2020년 11월, 발달장애인 동네 치과병원에서 진료거부

- 어릴 적부터 다녀왔던 동네 치과병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니 진료의 어려움을 이유로 진료 거부를 당함. 장애인진료센터는 최소 4개월 이후에 예약이 되며 결국 센터에 꼬박 대기하다가 진료가 잠깐 비는 시간에 간신히 치료를 받음.

4. 2020년 10월 거점병원인 한양대병원에서도 발달장애인 독감 예방접종을 거부

- 병원 측에서 '95kg인 데다 행동 제어도 안 돼 주사를 놓기 어렵다'며 거부

자료: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출

□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최선의 처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및 생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미 「의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8.8., 의안번호 제2202643호)의 내용(장애인 환자에 대한 최선의 처치 의무 규정)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실익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함.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백민. (2024.5.21.). 발달장애 이유로 병원 뺄뺄이 “발달장애인 건강권 보장하라”.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6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② (생략) <신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u>

- 다만, ① 발달장애인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장애유형과는 달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점, ② 「의료법」에서와 같은 ‘진료거부’가 아닌 ‘최선의 처치’로 명시하여, 의료인의 진료거부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포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관계부처 및 단체의견

가. 보건복지부

- 개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의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음.
- 또한 서미화위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2202643호)과 개정안은 입법 취지가 동일함.
 - 「의료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환자’를 포함한 전체 ‘장애인 환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발달장애인 환자’에 한정, 규율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안의 중복 규정에 해당될 수 있음.

나. 대한의사협회

- 현행 의료법 제15조 및 응급의료법 제6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동 개정안 신설은 불필요
 - 개정안 내용 중 “~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와 같은 불확정 개념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함에도 오히려 국민들에게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절

문 의 처
02)6788-5502